

2020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개정내용 정리

*기본이론 교재

교재페이지	기 준	변 경												
4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업급여(상시근로자수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0.65%</td> <td style="text-align: center;">0.65%</td> </tr> </tbody> </table>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상시근로자수 기준)	0.65%	0.6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업급여(상시근로자수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r> </tbody> </table>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상시근로자수 기준)	0.8%	0.8%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상시근로자수 기준)	0.65%	0.65%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상시근로자수 기준)	0.8%	0.8%												
55	<p>기출지문</p> <p>2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다.</p>	<p>기출지문</p> <p>2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p>												
107	<p>기초임금일액이 13만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 2천원을 상한으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p>	<p>기초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상한으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p>												
118	<p>기출지문</p> <p>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기출지문</p> <p>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120	<p>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p>	<p>-삭제(2020.02.28.)</p>												
122	<p>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p>	<p>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p>												

	<p>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p>	<p>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p>				
<p>123</p>	<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150만, 하한 50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imes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td> </tr> <tr> <td style="padding: 5px;">(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td> </tr> </table>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124</p>	<p>[2019.10.1. 현재]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40만원(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2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0일당 180만원)</p>	<p>[2020.5.1. 현재]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80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0일당 200만원)</p>				
<p>145</p>	<p>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 제1항 및 이 영 제125조 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p>	<p>* 전제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①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p> <p>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하는 사람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 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p>	<p>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p> <p>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7]</p>
148	<p>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 ▶ 콘크리트믹서트럭</p>	<p>-삭제 법령개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됨</p>
156	(2) 범위	(2) 범위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p>
158	<p>③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판단: 그 근로자의 성명,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p>	<p>③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판단: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p>
214	<p>④ 보험료율: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한은 보수월액의 <u>1천분의 80의 범위내에서</u> 정하여지며(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현재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율은 <u>1만분의 646</u>(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다만, 외국에 근무하는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 감액(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본문).</p> <p>(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p> <p>① 기본원칙: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부과 점수에 <u>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u>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p>	<p>④ 보험료율: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한은 보수월액의 <u>1천분의 80의 범위내에서</u> 정하여지며(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현재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율은 <u>1만분의 667</u>(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다만, 외국에 근무하는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 감액(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본문).</p> <p>(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p> <p>① 기본원칙: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부과 점수에 <u>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u>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p>

*객관식 교재

교재페이지	기 존	변 경
13	6번문제 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법 개정내용 반영
52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1)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동차를 사용하여 하는 여객, 화물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특수형태근로종사 제외)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1)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54	8번문제	법 개정으로 전체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른 문제삭제 부탁드립니다.
83	건설업자	건설사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 변경되어 이하 모든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변경됨
110	문제 2번	기존정답 3번에서 4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함. 문제출제상 오류가 있었음

* 객관식 교재

교재페이지	기 존	변 경
21	<p>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p> <p>- 65세 이후에 고용된자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p>	<p>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p> <p>-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p>
47	<p>기금은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호) ② 실업급여의 지급(제2호) ③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제3호) ④ 보험료의 반환(제4호) ⑤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제5호) ⑥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제6호) ⑦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보법 제80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①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제1호) ② 기금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제2호) ③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제3호) ④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제4호)의 경비를 말한다(고보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p>	<p>기금은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호), ② 실업급여의 지급(제2호), ③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제2의2호), ④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제3호), ⑤ 보험료의 반환(제4호), ⑥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제5호), ⑦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제6호), ⑧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보법 제80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①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제1호) ② 기금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제2호) ③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제3호) ④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제4호)의 경비를 말한다(고보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p>
51	<p>(2)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p>	<p>(2)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u>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u></p>

7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① 55세 남편 ② 59세 부모 ③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의 배우자 ④ 20세 자녀 ⑤ 20세 형제자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① 55세 남편 ② 59세 부모 ③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의 배우자 ④ <u>30세 자녀</u> ⑤ 20세 형제자매
93	20. ④ 건설업은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이상이어야 한다.	20. ④ 건설업은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u>60억원 이상인</u> 사업이상이어야 한다.
94	21. ④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경우 월별 부과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근무하는 관리직도 월별 부과지의 대상이 아니다.	21. ④ <u>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경우 월별 부과지대상이 아니지만 본사에 근무하는 관리직은 월별 부과지의 대상이다.</u>
125	2)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2) <u>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이</u>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129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 <u>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u>
231	12.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180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12.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232	17. ② 최고액 : 1일 4만원	17. ② 최고액 : 1일 6만 6천원
238	09.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09. 2. 「 <u>건설기계관리법</u> 」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람
240	정답 ③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출퇴근의 방법이 도보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③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로로의 통근중의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259	09. ③ 3월이 아니라 12월간(법 제110조) ①②⑤ 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24개월)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시행규칙 제45조의 2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에 관하여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09. ③ 3월이 아니라 12월간(법 제110조) ①②⑤ 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6개월)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u>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시행규칙 제62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에 관하여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u>해당 사업장에서 사용관계가 끝난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u> 규정하고 있다.
261	18. ④ 건강검진의 대상, 회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이다(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18. ④ 건강검진의 대상, 회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의 피부양자,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이다(건강보험법 제52조)
262	21. 이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2천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천680점으로 한다(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 제4항).	-해당내용삭제
272	04. ㄹ. (×) 동법 제18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u>미년</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04. ㄹ. (×) 동법 제18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u>매년</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76	<p>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p>	<p>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289	<p>10.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영 제95조 제1항 단서)</p>	<p>10.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제1항 각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영 제95조 제1항 및 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